



# 부동산



2024년부터  
이렇게 달라집니다

세제·  
금융편

2024
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혼인·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

직계존속으로부터 **증여받은 재산**  
**최대 1억 원까지**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



증여자

**직계존속**

공제한도

**1억 원**

증여일

**혼인신고일 이전 2년 ~ 이후 2년**(총 4년) 또는  
 자녀의 **출생일**(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)부터 **2년**

시행일

2024년 1월 1일 이후

2024
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영상콘텐츠 제작비용

## 세액공제 확대

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 
세액공제율 상향& 추가공제 신설 시행



### 기본공제

TV프로그램, 영화, 드라마 등 **영상콘텐츠 제작비용**(배우출연료, 인건비, 세트제작비 등) **공제율 상향**

### 추가공제

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 
대상으로 **추가공제 적용**

	기본공제	추가공제	최대공제율
대기업	3 → 5	10	15
중견기업	7 → 10	10	20
중소기업	10 → 15	15	30

2024
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

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 
**소득·법인세 감면제도**를 신설



감면율

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**5년간 100%** +  
이후 **2년간 50%** **법인세·소득세 감면**

감면한도

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 원  
(청년·서비스업 2,000만 원)

시행일

**2024년 1월 1일 이후**

2024
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 
**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**

**공제한도**

연 300 ~ 1,800만 원 →  
**연 600 ~ 2,000만 원**

**주택요건**

기준시가 5억 원 이하 →  
**6억 원 이하**

**시행일****2024년 1월 1일 이후**

- 공제한도: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- 주택요건: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2024
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

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**기준금액 상향**

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  
**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\*** 기준금액 상향

\* 연금 수령액에 대해 3~5%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

연 ~~1,200~~ →

**1,500만 원**



2024
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

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 및  
연부연납 기간 확대, **사후관리 요건 완화**



## ① 저율과세 구간 확대

: 10%의 낮은 세율 과세 구간

60억 원 →

**120억 원**으로 확대

## ② 연부연납 기간 확대

: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연부연납기간

5년 →

**15년**으로 확대

## ③ 사후관리 요건 완화

: 사후관리기간 중  
업종변경 가능범위 확대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→

**대분류**로 확대

2024
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 
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



## ① 소득세·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 확대

(현행) 5년 100% + 2년 50% → (개정안) **7년 100% + 3년 50%** 감면

## ②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

(현행)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→ (개정안) 「해외진출기업복귀법」상  
**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**

2024
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·발행

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위한 **개인투자용 국채 발행**

①

##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

전용계좌만 개설 후  
청약(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)  
통해 구매 가능

②

##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

최소 10만 원부터  
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

- ③ 만기 보유 시 **가산금리**,  
**연복리** 및 **분리과세(14%) 혜택 적용**
- ④ 매입 1년 후부터 **중도환매 신청 가능**



2024  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

## 주담대·전세대출 까지 확대

아파트 주택담보대출,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 
금융소비자도 **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**

### 대환대출 인프라



영업점 방문 없이  
대환대출 신청 가능



신규대출 실행 즉시  
대출이동이 완료

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 
**핵심 불편이 해소**될 예정

